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9-06

부 산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7누24066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

원고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부산노인전문제1병원

피고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부산광역시 북구청장

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. 9. 29. 선고 2017구합21907 판결

변 론 종 결 2018. 6. 15.

판 결 선 고 2018. 7. 13.

주 문

1.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6. 6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세(재산분)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9-06

9,973,950원, 주민세(종업원분) 41,568,860원, 지방소득세(종업원분) 64,936,300원, 합계 116,479,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2. 피고의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 내지 6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.

가. 부산광역시는 치매 및 노인 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(이하 '이 사건 조례'라고 한다)를 제정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 산161-5에 병원을 개설하고, 2005. 1. 24. 피고로부터 위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았다(이하 위 병원을 납세의무 귀속주체로서의 원고와 구별하여 '이 사건 병원'이라고 한다).

나. 부산광역시는 2005. 2.경 이 사건 병원의 위탁관리·운영에 관하여 의료법인 우산의료재단(이하 '우산의료재단'이라고 한다)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우산의료재단에 위탁하였다. 우산의료재단은 위탁기간 만료시 순차 재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.

다. 피고는 2016. 4.경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6. 6. 10.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과세처분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고 한다)을 하였다.

세목	과세기간	총 부과세액(원)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9-06

주민세(재산분)	2011년~2015년	9,973,950
지방소득세(종업원분)	2011년~2013년	64,936,300
주민세(종업원분)	2014년~2015년	41,568,860
합계		**116,479,110**

라.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, 조세심판원은 2017. 4. 14.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.

2.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판단

가. 관계 법령

■ 지방세법(2014. 1. 1.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)

제7장 주민세

제75조(납세의무자)

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(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)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(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·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(이하 "사업소를 둔 개인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. 다만,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.

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.

■ 법인세법

제1조(정의)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내국법인"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.

2. "비영리내국법인"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.

다. 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(이하 "법인으로 보는 단체"라 한다)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9-06

3. "외국법인"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(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.

제3조(과세소득의 범위)

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. 다만,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.

1. 각 사업연도의 소득
2. 청산소득(청산소득)
3.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

■ 국세기본법

제13조(법인으로 보는 단체)

① 법인(「법인세법」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아닌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(이하 "법인 아닌 단체"라 한다)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.

1.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
2.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

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. 이 경우 해당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.

1.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
2.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·관리할 것
3.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
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(이하 "법인으로 보는 단체"라 한다)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.

나. 판단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9-06

위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75조, 법인세법 제1조,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면, ①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고, ②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·관리하고, ③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, ④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은 법인이 아니더라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, 그 범위 내에서 조세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.

그러므로 원고가 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, 을 제11호증의 1, 2, 제12,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,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밖의 요건, 즉 원고가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고,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·관리하는 등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형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9-06

판사 사경화

판사 김성식